

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5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3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 위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창군 특용작물 생산 체계 구축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“특용작물”, “시설·장비”의 정의 명시

다. 사업 수행(안 제4조)

라. 운영 방법(안 제5조)

-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,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마. 자격 및 선정방법(안 제8조)

- 군수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단,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바. 위탁료 및 사용료(안 제14조)

-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 및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-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사. 군수의 지도·감독(안 제15조)

- 군수는 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 사항 등을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별도 예산 조치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5. 6. 10. ~ 2025. 6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0882호, 농산물유통과-7959(2025. 6. 10.)호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7703(2025. 5. 21.)호]

- 3)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7703(2025. 5. 21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9316(2025. 5. 21.)호]
- 5) 법제심사: 적정 [기획예산과-1872(2026. 1. 27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568(2026. 2. 9.)호]

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”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.)란 특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·생산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·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, 부대시설을 말한다.
2. “시설·장비”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, 연구·실험시설과 기계장비, 부대시설(창고, 사무실 등),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.
3. “특용작물”이란 「농업통계조사 규칙」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특용작물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지원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-2번지 일원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특용작물의 산업화,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

2. 특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, 가공·보관·유통·판매
3.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
4.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
5. 그 밖에 특용작물산업화를 위해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.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운영방법)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,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범위는 부지, 건물 및 시설·장비 일체를 말한다.

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수익사업) ①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얻은 수익금 등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격 및 선정방법) ① 지원센터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

하는 자는 특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또는 생산·제조·가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 한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단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0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③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) ①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

②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를 따른다.

제10조(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)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우
2.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
우
3. 제12조를 위반하거나 제12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
4. 파산, 해산 등으로 인해 지원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
5.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11조(휴·폐업 사전신고)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원센터를 휴·폐업하고자 할 때에 그 30일 전까지 휴·폐업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, 군수는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산의 관리) ①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③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 단,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.

제13조(손해배상)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위탁료 및 사용료) ①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

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 및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·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15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·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,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,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.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용 허 가 신 청 서

사무명	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	
신 청 인	법 인 (단체)명	
	주 소	
	성 명 (대표자)	
법인(단체) 설립근거		
재 산	· 소재지:	
	· 지목(구조):	
	· 면적(건물면적):	
사용기간		
사용목적		
사용료		
사용조건		
<p>「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」 제8조제3항에 따라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용허가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font-size: 1.2em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신청자 주 소 : 법인(단체)명 : 대 표 자 : (인) </p>		
평창군수 귀하		
○ 첨부서류		
1. 법인(단체)현황: 설립인가(등록)증 사본, 법인(단체) 등기부등본, 법인(단체)정관 사본, 법인(단체) 기본재산 현황, 수익사업 현황, 운영실적		
2. 운영계획서: 사업계획서, 시설물 운영계획, 경영 및 마케팅 계획, 전문 운영 인력 확보계획, 운영비 부담 계획 등		
3. 그 밖에 증빙자료		
※ 해당서류 각 1부		

관계법령 발췌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제25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
3.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

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20조의2(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) ① 영 제13조제3항 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

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⑦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른다.